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731
--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8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0년 8월 12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

-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(2020년 9월 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황보연)

가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·자영업자·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, 재난에 대한 '심각'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 기간, 시설물 등을 정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30%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5.28.~2020.6.17.

- 의견있음(별도 첨부)

[별첨] 입법예고결과 의견 요약서

[별지 제2호서식]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역삼동 GS 타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상업시설 뿐 아니라 업무시설에도 적용되도록 검토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경감 대상시설물 및 경감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
현대백화점 신촌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개정에 동의 ○ 다만, 단위부담금도 현행유지토록 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금번 개정사항에는 단위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
한국호텔업협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호텔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50%이상의 감면을 적용이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최대 경감율은 30%로 규정하였으며,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향 조정하기는 어려움
더블유티씨서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시시설, 유통시설, 문화시설 등 최대 경감률(30%) 적용 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경감 대상시설물 및 경감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
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물을 고려하여 30% 범위에서의 경감은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, '30% 범위에서 경감 할수 있다' 문구를 '30% 경감한다' 로 문구 수정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 개정의 목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상황에 대한 최대감면율을 정하여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, 감면율을 30%로 특정할 경우 향후 모든 상황에서 30%감면을 하게 되어 특정상황에 대한 감면율 판단 및 적용이 어려움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1)에 따른 재난 심각단계 발령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%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

- 관심 (Blue) 해외의 신종 전염병 발생시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태풍, 집중호우 기상정보가 있을 때 발동하며 국내 가금류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때 발동
- 주의 (Yellow) 해외의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때, 국내에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, 지역별 재출현 전염병이 발생할 때,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때에 발동
- 경계 (Orange) 해외의 신종 전염병, 국내 신종 전염병, 재출현 전염병, 수인성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될 때 발동
- 심각 (Red) 해외의 신종 전염병, 국내 신종 전염병, 재출현 전염병, 수인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징후가 있을 때 가동하며 이 때의 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일반인구 사이에서 유행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,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2)에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
-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, 재택근무 등으로 교통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며,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6월 동안 지하철과 버스 이용승객은 전년대비 각각 28.6%, 23.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⁾

또한,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은 연면적과 단위부담금, 교통유발계수로 결정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

※ 참고 :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

- 근거 :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부과대상 : 도시교통정비지역(인구 10만 이상 도시) 내 연면적 1천㎡이상 시설물 소유자
* 2019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: 75,082건
- 산정기준 : **부담금 =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× 단위부담금(㎡) × 교통유발계수**
* 교통유발계수 : 공장(0.47) ~ 백화점(10.92)
- 부과기간 : 전년도 8. 1. ~ 해당년도 7. 31 / 납부기간 : 매년 10. 16. ~ 10. 31

2) 제36조(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3) 코로나19 전후 지하철, 버스 승객 증감율 (서울시 자료)

구 분	수송인원(천명)			
	'20년	'19년	증감	증감율
지하철	804,174	1,126,030	△321,858	△28.6%
버스	466,811	608,548	△141,737	△23.3%
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, 국토교통부는 ‘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’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별 ‘부담금 경감 조례’ 개정⁴⁾을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음
- 따라서,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심각 단계가 발령⁵⁾될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- 다만,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서울시 세입 결손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세입 감소(30% 감면시 최대 598억원)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 사업추진⁶⁾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며,

4) 코로나19 대응 관련 ‘교통유발부담금’ 경감 조치 등 적극 협조 요청(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-2672, 2020.4.9.)
 2. 정부는 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·자영업자·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.
 3.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‘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’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금년 부과기준일(‘20.7.31.) 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】

①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% 이상 경감

5) 코로나19 감염병은 신종플루 바이러스(2009년) 이후 두 번째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(‘20.2.23) 됨
 6)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, 교통체계 관리, 신호기의 안전 및 안전표지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업, 대기오염 방지시설,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

※ 경감비율에 따른 세입 결손액

단위 : 백만원)

경감률	세입 예상액	세입예산	세입대비 결손	징수예상액	징수대비 결손
30%	139,752	184,013	△44,261	199,646	△59,894
25%	149,734		△34,279		△49,911
20%	159,716		△24,297		△39,929
15%	169,699		△14,314		△29,947

전국 대도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의 60%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경감에 대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, 세입감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정범위 내에서 경감비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

※ 타 광역지자체 유발부담금 징수규모('18년 기준)

지자체명	계	서울	부산	인천	대구	대전	광주	울산
징수액 (억원)	2,675 (100%)	1,578 (59.0%)	330 (12.3%)	251 (9.4%)	198 (7.4%)	132 (4.9%)	112 (4.2%)	74 (2.8%)
30% 경감액(억)	802	473	99	75	59	40	34	22

- 아울러,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경감 혜택 또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을 통한 감면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, 시설물에 임대 하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,

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, 경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실제 경감 일수 산정 등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 교통유발금 부과와 징수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의2(재난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/u></p>